

2022년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안내



사업 개요

2022년 운영 계획

지원 방법

FAQ

질의 응답

#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해당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규 지원 대상)**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 재학생 11명**
    -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 13명**
  - **(지원 금액)**
    - **의과대학생 1인 1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 **간호대학생 1인 1학기당 820만원(연간 1,640만원)**
-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업 개요

- **(지원 조건)** 장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 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 \* 지원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근무
  -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 선정되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요청에 따라 일부 기간만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학기 단위)
- **(지원 가능 지자체)**
  - 의과대학 :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중 1개 지자체 선택
  - 간호대학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중 1개 지자체 선택
- **(지원 절차)** 학장 추천 → 지자체 추천 → 복지부 선발 → 장학금 지원(개인 계좌)

학교 소재 지역 ×  
근무하고 싶은 지역 ○

# 사업 개요\_추진 체계

## 사업단계

장학생 선발

장학금 교부

장학생 관리

졸업 후 관리

## 사업절차

사업지침 확정

장학생 신청

장학생 추천

면접 등 선발평가

장학생 최종 선정·통보

장학금 교부신청서 제출

장학금 교부

학사 보고

학사 관리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체계 운영

의무복무 관리(배치 및 유예)

경력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자

각 대학, 시·도

선발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복지부

각 대학, 시·도

각 대학,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사업 개요\_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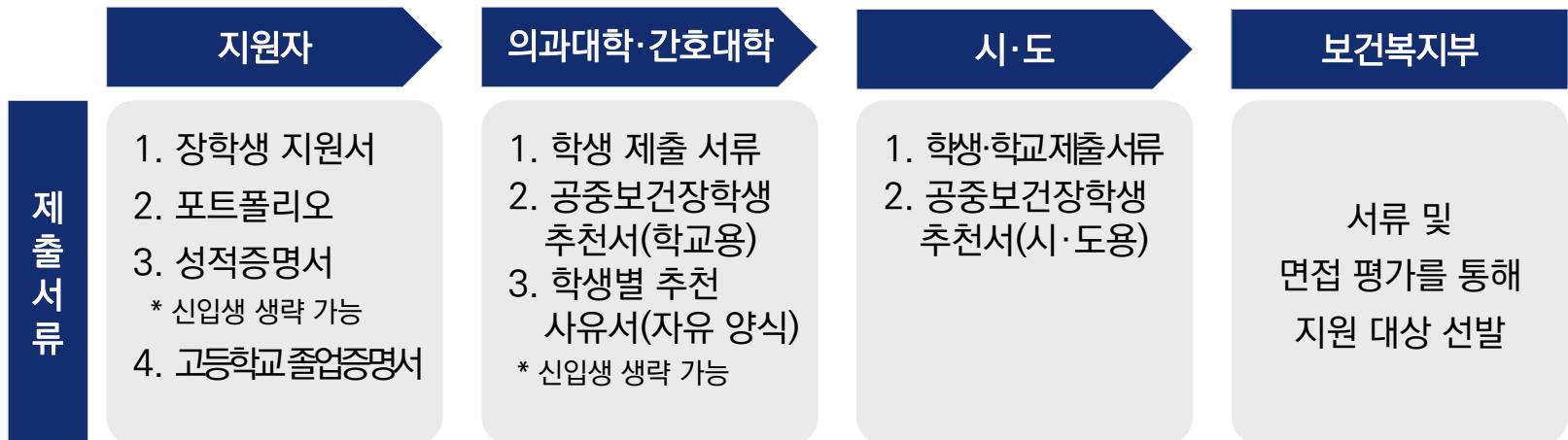
구분	역할		구성원	
보건복지부	전반적인 관리·감독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 위탁 수행		-	
위원회	선발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각 대학 및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평가 실시</li> </ul>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li> <li>-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li> </ul> </td> </tr> </table>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li> <li>-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li> <li>-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li> <li>-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배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td> </tr> </table>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제도 개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제도 개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td> </tr> </table>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 2022년 운영 계획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 (모집 및 신청)

- 기한 : **3월 25일(금) 18:00** 의과대학·간호대학 행정실 제출
- 절차



- \* 추후 근무하고 싶은 한 개의 시·도를 선택하여 지원(중복 지원 금지)
- \* 신입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학생별 추천사유서 생략 가능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 (선발)
  - 서류(포트폴리오 등) 및 면접 평가를 통해 학업 능력,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의지, 향후 활동계획 등 평가
    -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연락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 지원자 작성

###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지원자	성명	한글		생년 월일		사진 (3cm×4cm)	
	한자						
	주소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재학 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 학년	희망 지원 기간	학기 (이번 학기 포함)		
	직전 학기 평점 평균		만점 (체크) 4.3	고등학교 소재지역			희망지원 지역
* 직전 학기 성적을 기재 * 신입생인 경우 미기재		*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기재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면허취득 후 소정의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하며 공중보건장학생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 \* 총 1,200자 이내로 작성함(공백 제외)
  - 학창시절 활동(600자)
  -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생 선발

##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혹은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작성

### 공증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주소	희망 지원 기간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공증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증보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혹은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 (인)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공증보건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포트폴리오(자유 양식)
3.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4. 성적증명서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

\*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 (장학금 신청 및 교부)
  -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약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무복무 서약서\*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 선발된 장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일 경우 해당 시·도 담당자의 입회 하에 작성된 의무복무 서약서 필수 제출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 장학생 작성

###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성명	재학학교	학년	주소	연락처

장학금 지급 신청 기간

학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 명의여야 함

상기 본인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장학금 지급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할 개인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학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등</li> <li>· 장학금 지급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학적 변동사항</li> </ul> <p>※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의무복무 종료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의무복무 종료 이후에도 법령상의 무이행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li> </ul>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li> </ul>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p>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년 월 일

장학생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추가 작성

# 의무복무 서약서

공중보건장학생 ○○○는 ○○시·도 담당자의 입회 하에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 ○○○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입회자 :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자 : 재학 학교 :

성명 (서명 또는 인)

# 2022년 운영 계획\_장학금 관리

- (장학금 관련 규정)
  - 정지 및 중단
    - 재학 중 **휴학·정학·유급**(다음 학기·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해당 학기·학년 교육과정을 재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정지됨**
    - 장학금이 정지된 지 2년이 지난 경우, 사망, 퇴학 또는 제적, 전과(轉科),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품행 불량,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 반환
    -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복무를 불이행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함**
- \* 학생 요청에 따라 재학기간 중 일부 기간만 지원받기를 원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2022년 운영 계획\_재학 중 관리

-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연 2회)
  -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대병원 개최 포럼 및 심포지엄 참석(4회 이상)
- **(멘토링 체계)**
  - 의과대학생은 지역보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연 1회)
  - 간호대학생은 지방의료원 간호부서장이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반기 1회)
-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학사 진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리, 공공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 관리, 멘토링 체계 운영 수행

# 2022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배치·경력 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장학생 배치 조정, 의무복무 기간 단축 심의 등 졸업 후 관리를 총괄
- (수련)
  - 전문의 수련 기관 및 전공 자유 선택
- (모니터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의무복무 실적 관리, 경력 개발 지원, 인센티브 관련 정보 제공, DB 등록 관리 등을 수행

# 2022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의무복무 실시)
  -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하되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한정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
  -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인력 수요**와 **장학생의 선호** 조사 결과, **지자체 배치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 가능
    -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
  - 보수는 소속 기관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

# 2022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의무복무 유예)
  -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의무,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의 일시적 중단이 가능

# 2022년 운영 계획\_졸업 후 관리

- (의무복무 기관 배치 절차)
    - 지자체에서 배치 후보 기관 제시 후 **장학생 선호 기관 조사**(졸업 예정 연도 1월)
    - **지자체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1월)
    -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및 장학생의 선호, 지자체 배치 의견을 종합하여 **배치 기관 결정**(2월)
    - 지자체에서 장학생에게 **배치 결과 통보**(2월)
    - 배치 결과에 따라 **의무복무 개시**(3월 초)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방법

---

# 지원 방법\_제출 서류

작성주체	제출 자료		제출처
(1) 지원자	지원서	별도 서식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시·도→보건복지부)
	포트폴리오	1,200자 이내 자유 서식	
	성적증명서 * 신입생일 경우 생략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2) 의과대학장(의학 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 (간호학과장)	지원서	(1) 제출 서류	학생이 졸업 후 근무하고 싶은 시·도
	포트폴리오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천서	별도 서식	
	학생별 추천사유서	1페이지 이내 자유 서식	

\* 제출 서류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포트폴리오는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로 작성함(공백 제외)

# 지원 방법\_일정

---

- (모집) **3/25(금) 18:00** 각 의과대학(의전원) 혹은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  
*\* 3/7(월)~14(월)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면접) 4/9(토)~4/17(일) 중 예정
- (최종 결과 발표) 4월 중 예정
- (장학금 지원) 4월 말~5월 초 예정

# FAQ

---

# FAQ

**Q) 장학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입니다(학년 무관).

**Q) 장학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등록금과 관계없이 1학기당 의대생은 1,020만원(연 2,04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연 1,640만원)이 지원됩니다.

**Q) 장학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A) 장학금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장학금은 학교가 소재한 지자체에 신청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졸업 후 근무하고 싶은 지역에 신청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다음의 시·도가 참여합니다.

- 의과대학 :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간호대학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FAQ

Q)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은 없고 전국 단위에서 선발합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Q)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장학금은 수혜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자체가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Q) 장학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최소 2년~최대 5년).

# FAQ

Q) 장학금을 2년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졸업할 때까지가 아닌 학기 단위로 일부 기간을 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장학금을 1년만 받고 싶은데 그럼 의무복무도 1년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법률 상 1년만 받아도 최소 2년을, 6년을 받더라도 최대 5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근무하고 싶은 지역과 근무 부서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지역은 광역지자체까지만 선택이 가능하고, 근무 부서는 배치 기관에서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 의무복무 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

A) 의료기관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기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 FAQ

---

**Q) 의무복무 중 근무 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배치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A) 개인이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고 기관에서도 원한다면 상호 협의 하에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Q)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근무 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FAQ

## Q)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A) 의무복무지역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FAQ

---

**Q)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은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產)의 수습을 받는 경우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FAQ

## Q) 장학금의 지급 정지 또는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휴학 또는 유급 시 장학금 지급은 정지되며, 2년 이상 장학금이 정지되거나 퇴학 등으로 인해 향후 의사·간호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 FAQ

Q) 장학금 및 이자 반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FAQ

Q) 만약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0조(행정처분)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Q) 의무복무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보수체계로 지급받게 됩니다.

Q) 다른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 [hyein.park@nmc.or.kr](mailto:hyein.park@nmc.or.kr)) 혹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